##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01호, 2024. 3. 26.,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93호, 2025. 8. 5.,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를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61호, 2025. 5. 1., 일부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2008. 2. 29.>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삭제 <2020. 4. 7.>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이 그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 이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보증하되, 이를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삭제 <2010. 7. 2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삭제<2020. 4. 7.>	

제5조의2(청렴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생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 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각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代理)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학수 있다

기가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 계약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전문개성 2012. 12. 18.]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해제・해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① 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9. 17.>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위임·위탁을 때 법 제6조에 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 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 기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9. 17., 2020. 4. 7.>
[본조신설 2013. 6. 17.]

제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7속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변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하여야 한다. **계약의 계** 법 제5조 지키지 아 지기지 이 을 승인할 I 해당 계 관하여 기 등을 고려

제5조(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한다)을 임명하였거나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 또는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뜻을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규정한 재무관 및 지출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9. 8.>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계약관,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계약관, 분임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계약관이 자를 대리하는 공무원이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하고 가장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의 점기를 얻어 기탁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 다한다.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받아 기막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기하여 다한다.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당하는 경안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기하여 다한다.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이 전부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각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암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代理)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할 수 있다. ② 각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전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관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의 위탁 분장이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관시에 기막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 일본 건의 기관에 일부 분장이 있다. ⑤ 기작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 기약관은 대통령령으로 담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각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암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代理)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할 수 있다. ② 각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본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관의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관시에 기막과 제2항에 따른 계약관의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관시에 위탁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한 시의 위약관의 시작 기관에 설치된다. 『정하는 대통령으로 대통령으로 담당할수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정하는 대통령으로써 갈음할 수 정하는 대통령으로 대통령으로 담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계약관의 재정보증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 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기획재정 ② X 하여 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 9. 9., 2008. 2. 29.>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개 정 1996.12.31>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이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음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한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추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의한 귀액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가 기상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조달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1996. 12. 31.]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1996. 12. 31.>]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당당공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른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5. 1., 2021. 7. 6., 2024. 7. 16.>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제98조제2호에 따른 일괄입찰,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를 말한다.<개정 2020. 5. 1, 2021. 7. 6., 2024. 7. 16.>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제 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제 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전문개정 2020. 4. 7.]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 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자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등의 범위안에서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2008. 12. 31.>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 

4.>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 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 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 격.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 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 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3. 12. 11, 2006. 2. 8, 2007. 10.

10.> 10.>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2008 2 29 >

2003. 12. 11., 2008. 2. 29.>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9조제 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신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2) 영 제의조제1한편으로에 되는

한 가격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 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 9. 9., 2009. 3. 5., 2014. 11. 4.> [제목개정 2014. 11. 4.]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제 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99. 9. 9., 2009. 3. 5.> 2009. 3. 5.>

재료비 기. 제표미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 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 당 가격을 곱한 금액 ᅮ누민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 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 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기 이미 기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 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5. 이윤 노무비・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이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고 원가계산 결정함에 각호의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 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 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9. 9. 9., 2009. 3. 5.>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 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 서에 의한다.<개정 2005. 9. 8., 2013. 6.

28.>
1. 감정가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mathrm{계약금액 }}@@/LATEX@@ ;@@LATEX@@2.등락폭 = 계약단가 ₩times ₩mathrm{등락률 src="/LSW/flDownload.do?flSeq=2598 3013<sup>"</sup>

7 법제처

/>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단가 x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이 하는데..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 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 어제는 다음 각물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 9. 8. >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 산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09. 3. 5.>
⑧ 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 (2006년 5월 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신설 2006. 12. 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신설 2006. 12. 29., 2010. 7. 2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9. 9. 9. 2. 2005. 9. 8.> 1999. 9. 9. 2005. 1999, 9. 9., 2005, 9. 8.>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 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9. 9. 9., 2009. 3. 5.> 제3장 계약의 방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 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 제22조(경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 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가 제10조(경쟁방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 규을을지 다.<개정 2008. 12. 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부칠 수 있다.<신설 2008. 12. 31, 2024. 12. 24.> 다.<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들 필표인 두 다른 등될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 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 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 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 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야 한다.<신설 2017. 12. 19.> [전문개정 2012. 12. 18.]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대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 · 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대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02. 8. 24., 2012. 5. 18, 2013.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일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업학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업학을 개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③ 삭제 <2000. 12. 30.>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

이 시나지 아니던 지에 내어서 ㅂㄹ ㅁ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각 중 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 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1. 삭제<1999. 9. 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 섯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 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임차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 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 또는 임대하게 하거나 용역 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9, 9, 2005, 9, 8, 2006, 5 .<신철 1999. 9. 9., 2005. 9. 8., 2006. 5. 30., 2007. 10. 10., 2013. 6. 17., 2024. 12. 24.>

1. 삭제 <2007. 10. 10.>

1. 국제 2007. 10. 10. 2 2. 삭제 <2007. 10. 10. >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말한다.<신설 2013. 12. 30., 2017. 3. 27., 2018. 12. 4., 2019. 9. 17., 2021. 2.

말안나.<신설 2013. 12. 30., 2017. 3. 27., 2018. 12. 4., 2019. 9. 17., 2021. 2. 17.>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관계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29조제 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보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하고, 기존에 따른 기장제3호에 해당하는 자보기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제29조제 1항제3호에 하당하는 지를 제약당당의 생길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 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어류를 제출하게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30 일 2013. 12. 30.>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 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 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 영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1999. 9. 9., 2006. 12. 30.,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2007. 10. 10., 2009. 3. 5., 2013. 6. 28.>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6. 아더 각각 이들 등당하게 하더야 한다.<개정 1998. 2. 23., 1999. 9. 9., 2006. 5. 25., 2007. 10. 10. >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 이 의한 자금 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 2002. 8. 24. > 2002. 8. 24.>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히여서는 아니된다.

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3. 12. 30.>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5항・제6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신설 2013. 12. 30., 2016. 9. 2., 2021. 7. 6., 2024. 9. 20.>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0. 7. 21., 2015. 지해야 한다.<개정 2010. 7. 21., 2015. 12. 31., 2019.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개정 2010. 7. 21., 을 정해야 한다.<개정 2010. 7. 21,, 2019. 9. 17.>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사업자들을 구하고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 선정할수 있다.<개정 2010. 7. 21, 2019. 9. 17.> 4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경자를 선정할수 있다.<개정 2010. 7. 21, 2019. 9. 17.> 4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전에 출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이 되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다. 다면, 「전자조달의 이용 따라 기획재정부를 합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합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이를 기존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발하면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제2항이라는 정보처의 한다)에 이를 거재함으로써 열람 및 지원함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다양명서로의 사전심사에 관하여 되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하여 있을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하여 있을 제1항에 따른 시작 일 제2항에 따른 계약이 행의 있는 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되었는 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되었는 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되었는 당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7. 21.>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준수정도,「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른부실벌점, 같은 법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2013. 6. 19., 2016. 2. 1.>

2013. 6. 19., 2016. 2. 1.>

제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①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 분본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장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시의 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저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시리 기간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부탁되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에 하여 다른 보완기간이 끝난 부터에 가하여 그 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가하여 그 결과를 전자조당시스템에 가하여야한다. <개정 2013. 9. 17.>
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제14조의2에 따른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심사를 보부터 3일 이내에 그 재심사 결과에 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제14조의2에 따른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를 당공무원에게 자심사를 가게 세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는 기가 제4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이르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를 당공보여야야 한다.

제39조(입찰참가의 통지등)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 13조 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 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 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0. 7. 21.,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19. 9. 17.>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설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전자조 당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 게 아는 중구에는 돌등대학자들 전기포 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신 설 2010. 7. 21., 2015. 12. 31., 2019. 9. 17., 2023. 11. 16.> 작제 2023. 11. 16.> (3) 식세<2023. 11. 16.> (4) 삭제<2006. 5. 25.> (5) 삭제<2006. 5. 25.> (6)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해야 한다. 다만, 추정자계1회에 따라 제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 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야 한다.<개정 2015. 12. 때에 세출에야 안다.<개성 2015. 12. 31., 2019. 9. 17.>
① 제6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19. 9. 17.> 다.<개정 2015. 12. 31,, 2019. 9. 17.> ⑧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개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 영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09. 3. 5., 2010. 7. 21.>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삭제<2010. 7. 21.>
5. 영제42조제5항 · 제6항에 따른 낙찰을 포함한다) 6. 영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7. 2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장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1. 제1호의 경우 과업지시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1. 제1호의 100. 7. 21.]

법제처 13

정 2019. 9. 17.> [전문개정 1996. 12. 31.]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등의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1., 2024. 12. 24.> 24.>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0. 7. 21., 2013. 9. 17.>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수 있다.<개정 2000. 12. 27., 2005. 9. 8., 2010. 7. 21., 2020. 12. 8.>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24.> 8,, 2010. 7. 21., 2020. 12. 8.>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 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 1항・제3항, 제43조 및 제43조의3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 보다 하여 인하고 지시 이를 면서하여야 의 특성에 직접하다고 판단되는 망접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6. 5. 25., 201<u>0. 7</u>. 21., 2018. 12. 4.> 안다.<개성 1999. 9. 9., 2006. 5. 25., 2010. 7. 21., 2018. 12. 4.>
⑤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지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존액을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다 기계전 1000.00 표시하여야 한다.<개청 1999. 9. 9., 2008. 2. 29., 2010. 7. 21., 2024. 12. ⑥ 제14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 ③ 제14도제08의 IT S는 8기울읍/ 초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 7. 21.> [전문개정 1996. 12. 31.] [제목개정 2024. 12. 24.]

8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 영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09. 3. 5., 2010. 7. 21.>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삭제<2010. 7. 21.>
5. 영제42조제5항 • 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 을 포함한다) 6. 영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영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 "란 다음 경기 수 기를 가 성부명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 "라 다. 기기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1996. 12. 31.] [제목개정 2010. 7. 21.]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 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있다.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일반경쟁입 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 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 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기획재정 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기획재정 2008. 2. 29. > 2008. 2. 29.>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한다. 한다.

제19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 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 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 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 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 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 할 경우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 각 중 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 5. 25, 2008. 2. 29, 2018. 12. 4, 2024. 12. 24.> 2024. 12. 24.>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31., 2006. 5. 여야 한다.<개정 1996. 12. 31., 2006. 5. 25., 2008. 2. 29., 2018. 12. 4., 2024. 12. 24.>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31.> 다.<개성 1996. 12. 3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8. 2.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영 제18조제1항 · 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09. 3. 5., 2018. 12. 4.>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본조신설 2006. 5. 25.]
[제목개정 2018. 12. 4.]
[제23조의2에서 이동 <2010. 7. 21.>]

[제23소의2에서 이동 <2010. 7. 21.>]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시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한다.<개정 2000. 12. 30., 2002. 8. 24., 2012. 5. 18., 2013.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개정 2010. 7. 21.>
③ 삭제<2000. 12. 30.>

제19조(부대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 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 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 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20. 2. 18.> 지 아니아다. <개성 2008. 2. 29., 2020. 2. 18.>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사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46호(2002. 3. 25.) 제 1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 지 유효함]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 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 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 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개 정 2019. 9. 17.>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19. 9. 17.> 2019. 9. 17.>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신설 3

1998. 2. 2., 2019. 9. 17.>

팇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 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 중앙관서의 계약을 체결 할 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 에 붓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전문개정 2012. 12. 18.]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 12. 31., 1997. 7. 10., 1999. 9. 9.,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09. 11. 2007. 10. 10., 2008. 2. 29., 2009. 11. 20., 2010. 7. 21., 2011. 1. 17., 2011. 10. 28., 2012. 10. 8., 2014. 5. 22., 2016. 9. 2., 2016. 9. 29., 2017. 7. 26., 2018. 3. 6., 2018. 12. 4., 2021. 2. 2., 2021. 9. 14., 2022. 1. 25., 2022. 6. 28., 2024. 7. 14., 2022. 1. 25., 2022. 6. 28., 2024. 7. 2., 2024. 12. 24.>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조실적 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 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 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삭제 <2017.1.26>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 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물품라.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이. 중소기합세품 구배독신 및 판로시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영 제 2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 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 을 말한다.<개정 2005. 9. 8., 2009. 3.

호 달인다. 오세요 2003. 3. 3, 2003. 5. 5. 5. 5. 7.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문공사를 제외한다):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3억원 ②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6. 12. 31 1998 2 23. 1999. 9. 9., 2003. 12.

31., 1998. 2. 23., 1999. 9. 9., 2003. 12. 12., 2005. 9. 8., 2009. 3. 5., 2018. 12. 4.>

4.>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법 제4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 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 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 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개정

왕 등을 식성하게 고더해야 한다.<개성 2019.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으로 제 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 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하는 경우 및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시공능력은 다음 각 12. 31., 1998. 2. 23., 1999. 9. 9., 2005. 9. 8., 2006. 5. 25., 2017. 12. 28., 2019. 9. 1<u>7</u>.>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각.\_ a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내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

2. 게이이다기 하다에는 에이 다이기의 의 1배 이내 ③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어

8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물품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 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 9.무위정태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 10

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다.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 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 물품 목의

붓

부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 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할 수 있다.<개성 1996. 12. 31., 2009. 3. 5., 2018. 12. 4.>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 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3항 또는 영 제2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1996. 12. 31.>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7 > 2002. 7. 30., 2006. 5. 25., 2013. 9. 17.>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 •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개정 1999. 9. 9., 2008. 2. 29.>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 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 우 이행의 날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성 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개정 당 등을 직정하게 고더해야 한다.<개성 2019.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으로 제 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 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 있다.<기점 1996. 12. 31., 1998. 2. 23., 1999. 9. 9., 2005. 9. 8., 2006. 5. 25., 2017. 12. 28., 2019. 9. 17. 기.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각.\_\_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 1배 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영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 경우에는 사업자인 경이 1배 이내 영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고의 구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이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이 기부상 보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이 기부상 보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이 기부상 보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기자된 기자된 이 기자된 기자된 이 기자된 기자 1 등의 자본 1 등의 학자 1 등의 학자

12. 31.>

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 간은 종전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2. 5. 18.>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의 자리을 제한하여서 같은 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호 또는 여서는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수 에는 대만, 영 제21조제1항제8호 또는 이 시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수 있다.<개정 1996. 12. 31., 2009. 3. 5., 2018. 12. 4.> (⑥ 작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이 지연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수 있다.<개정 1996. 12. 31., 2009. 3. 5., 2018. 12. 4.> (⑥ 작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이 지역한 기준의 사항에 따라 제안하는 경우에는 장의 가장에 따라 제안하는 경우에는 기업회의 가능에 가는 기업을 당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3항 또는 영 제2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1996. 12. 31.>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전문개정 2012. 12. 18.]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 2. 2, 1999. 9. 9, 2000. 12. 27, 2003. 12. 11., 2005. 9. 8., 2007. 10. 10., 2008. 5. 21., 2009. 5. 6., 2009. 11. 20., 2011. 10. 28., 2017. 1. 26., 2017. 7. 26., 2018. 3. 6., 2018. 12. 4., 2023. 11. 16., 2024. 12. 24.>

26., 2017. 7. 26., 2018. 3. 6., 2018. 12. 4., 2023. 11. 16., 2024. 12. 24.>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 10인이내인 경우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 항요제푸 경우관한

활용제품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체품

세움 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 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 은 제품 중「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른 기준

법률」세2소의2세1호의2에 따든 기준에 적합한 제품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 한 물품을「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제 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 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 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 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 경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제 영 세23소세1당세1도 내지 세3도 에 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개정 1998. 2. 23., 1999. 9. 9., 2005. 9. 8., 2006. 5. 25.>

2005. 9. 8, 2006. 5. 25.>
1. 공사
가.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다. 삭제 <1999.9>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제29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하 "지명경쟁계약"이라 한다)을 보고하고 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3., 2006. 5, 25.> 23., 2006. 5.

23., 2006. 5. 25.>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삭제<2006. 5. 25.>
5. 삭제<2006. 5. 25.>
6. 기타 참고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지명경쟁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06. 5. 25.>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참가자로 지명된자로부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이를 비치하여야한다.
[제목개정 1998. 2. 23.]

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감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기업하는 지명하여야 한다. 기업하는 지명하여 기업을 기업을 가입할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업하는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입찰참가 의원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입찰함 기업에 있어요?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	
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 ·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 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성능 또 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 정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 차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 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 다.<개정 2024. 12. 24.>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전문개정 2012. 12. 18.]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21.,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14., 2013. 12. 30., 2014. 5. 22.,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0. 5. 1., 2020. 9. 29., 2020. 12. 8., 2021. 2. 2., 2021. 7. 6., 2023. 1. 3., 2023. 4. 11., 2023. 11. 16., 2024. 5. 7., 2024. 12. 24.> 16., 2024. 5. 7., 2024. 12. 24.>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가. 경우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기급한 안전진단 • 시설물 개선, 막에 이에 준하는 경우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의료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되어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되어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되어 이에 존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장에 바이 한정한다)를 제조 • 구매하는 경우 이는 방위사업청장이 구매하는 경우리 비상대해가 발생한 경제 모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대기를 자자의 함께 가는 경우로 하기 생물을 되었다.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지에 대한 책임 구부이 고라하

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접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하는 경우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등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다. 합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경우다.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 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전력 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 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 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 는 경우 그 들 경우 접는사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라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3., 2006. 5. 25., 2010. 7. 21.>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삭제<2006. 5. 25.>
5. 삭제<2006. 5. 25.>

삭제 <2006. 5. 25.> 5.

5. 삭제<2006. 5. 25.>
6. 삭제<2006. 5. 25.>
7. 기타 참고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5., 2010. 7. 21.>
[제목개정 1998. 2. 23.]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 다목,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5호다목 • 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02조 3)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 102 3) 「농림식눔씨 ¬ - -의2 4) 「농업기계화 촉진법」제7조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제18조 기보다 제57조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 7초 /\_\_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 사 사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저 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 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 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구매하는 경우에 한성한나) 아. 삭제 <2020.9.29>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능 정보화 기본법」제58조에 따른 정보보 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 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 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 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제 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 전제품 기항에 따른 석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작(해당 단체가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 기술이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 기술이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 기술이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 기술이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는 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 기상이 따라 보였다. 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승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 제22조의4세18에 띄니 모으므로 인 표준사업장 인 표준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인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 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 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 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서 공사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기수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지 1호에 따른 청년창업지원법」제2조제 11호에 따른 청년창업지원법」제2조제 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채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열계약 나.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이 제조・구매 연기 수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 11호에 따른 청년창업지원법」제2조제 11호에 따른 청년창업지원법 기업과 부분는 명정되는 경우다. 막는 이정되는 경우다. 막는 이정되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나는 대행한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무는 대행한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무는 대행한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무를 받는 대행한 수 있는 자와 하는 자와 하는 당한 기속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무슨 있는 대행한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무슨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무슨 있는 대행한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무슨 지역하다 된 지역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한 사업에 무슨 있는 대행한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무슨 있는 대행한 수 있는 대행한 수 있는 대행한 수 있는 대해당 보다 되었다면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와 계약을 하는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 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제조하게 하거 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추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장비를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장비를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세소아게 아거나 구매 또는 임사아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1., 2020. 9. 29., 2024. 12. 24.>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확인해야 한다.<신설 2006. 5. 25.,

2010. 7. 21., 2019. 9. 17.>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 구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 무부처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0. 7. 21., 2015.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
・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다 목 및 제5호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 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 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각 중 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감 사원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1996. 12. 31., 1998. 2. 2.<u>,</u> 2006. 5. 25., 2010. 7. 21., 2019. 9. 17.> ⑥ 삭제<2021. 7. 6.>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 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지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 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 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찰자가 없는 정의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 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제 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 동으로 인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국가 재정법」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최초의 입 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4. 22.>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있다.<개성 2025. 4. 22.>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201 등 1 > 1 > 1

> 29 법제처

2020. 5. 1.>

[전문개정 1998. 2. 2.]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 12. 31.>	제34조(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 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 가 이하로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7.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6. 12. 31., 2000. 12. 27., 2006. 5. 25., 2007. 10. 10., 2010. 7. 21., 2013. 9. 17., 2013. 12. 30., 2018. 12. 4., 2020. 5. 1., 2020. 9. 29., 2021. 7. 6., 2024. 12. 24.> 30, 2016, 12, 4, 2020, 3, 1, 2020, 29, 2021, 7, 6, 2024, 12, 24.>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가목7), 같은 호마목•사목•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r)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낭하는 자와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 +인 경우로 한다. .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 - 네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 전세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 +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 ) 을 적 견 전 건 지 구 1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기술 지역 전체 1호제 5호가목에 따른 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점 2006. 3. I., 2021. /. 6.>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 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 공20, 2013 9, 17.5 49., 2013. 9. 17.>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 구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은 기계점 및 함은 함은 등은 기계점 및 함은 함은 기계점 및 함은 함은 기계점 및 기 구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 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9, 2008. 2. 29, 2016. 9. 2.> 2008. 2. 29., 2016. 9. 2.>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 설 2006. 12. 29., 2008. 2. 29., 2013. 9. 17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영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로 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 너무 일 제30조제2항 단시에서 "전자조달시스로 다우 라이스를 말한다. <신설 2006. 12. 29., 2009. 3. 5.,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3. 9. 17.> 1. 2015. 9. 2015. 9. 2015. 9. 2015. 9. 2016. 9. 23.> 1. 2016. 9. 23.> 1. 2016. 9. 23.> 1. 2016. 9. 23.> 1. 2016. 9. 23.> 1. 2016. 9. 23.> 1. 2016. 9. 23.> 1. 2016. 9. 23.> 1. 2016. 9. 23.> 1. 2016. 9. 23.> 1. 2016. 9. 23.> 1. 2016. 9. 23.> 1. 2016. 9. 23.> 2017. 201

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 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 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 야 한다.<신설 2000. 12. 27, 2006. 12. 29, 2007. 10. 10.> ⑦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 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 정 1999. 9. 9, 2000. 12. 27, 2005. 9. 8, 2006. 12. 29, 2008. 2. 29, 2016. 9. 2.>	
제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계약금액) 계속공사(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에 있어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1999. 9. 9., 2008. 2. 29, 2019. 9. 17.>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제 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12. 30.>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3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 여 경쟁에 부치고자 한 때에는 이 영에	
제33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2002. 7. 30., 2013.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 9. 9., 2008. 2. 29.>	제39조(입찰참가의 통지등)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 13조 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 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 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 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 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 는 입잘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 1996. 12. 31., 2006. 5. 25.>
②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 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전 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10. 7. 21., 2021. 7. 6.>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수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성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2015. 6. 22.> 삭제<2015. 6. 22.>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2. 3. 25., 2002 7. 30., 2006. 5. 25., 2011. 12. 31., 2013. 9. 17., 2016. 9. 2., 2018. 12. 4., 2019. 9. 9. 17., 2016. 9. 2., 2016. 12. 4., 2019. 9. 1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착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7.>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 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 iv. 법률에 판안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무소등
12.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 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2의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12의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 다는 뜻(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 )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사항 사항
15의2.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6.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 기준 및 비율
1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1996. 12. 31.]
[대통령령 제17546호(2002. 3. 25.)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조(입찰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대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당한 다는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 이 건복 도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천문개정 2012, 12, 18.]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6. 12. 31, 2014. 11. 4, 2019. 9. 17, 1996. 12. 31., 2014. 11. 4., 2019. 9. 17., 2020. 5. 1.>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나 기점 1006 시호 1006

는 다음 각 호의 모등시등\_\_\_ B. 게 해야 한다.<개정 1996. 4. 8., 1996. 23., 2014. 5. 22., 2014. 11. 4., 2016. 2 2016. 5. 31., 2019. 9. 17., 2020. 12. 8., 2021. 7. 6., 2024. 5. 7., 2024. 12.

24.>
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 및「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

합니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 |공사공제조합 フ

ㅇ잉에고급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 ·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 다증라증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 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 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 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

기. 글세세되답기에 떠든 중세모답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 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

회중 앙회

하. 「방위사업법」제43조에 따라 보증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자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증서 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초에 이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2009. 3.5.>

2.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 하는 내용의 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을 하거나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에 이 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 9. 9., 2012. 5. 18.>

제54조(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호 의자 교육으로 되었다.

영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모증금을 당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5.>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조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국채중 등록국채로 납부하는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급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의 구정에 의하여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신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9. 3. 5.]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들"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31., 2005. 9. 8., 2006. 12. 29.>

피보증인의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일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

업무. 합너. 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른 국가유산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 따 더 따 합머 <sup>「</su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sub>L</sub>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 6. 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육 이 다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구익 5전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 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 정 1996. 12. 31., 1997. 7. 10., 1997. 12. 31., 1998. 2. 2., 1999. 6. 30., 2000. 12. 27., 2004. 12. 31., 2005. 9. 8., 2006. 4. 2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09. 6. 26., 2011. 1. 26., 2011. 2. 9., 2015. 2. 23., 2018. 12. 4., 2019. 9. 17., 2021. 7. 6., 2022. 3. 25., 2024. 5. 17., 2021. 7. 6., 2022. 3. 25., 2024. 5. 7.>
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조합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조합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병한시, 중앙회(농합경) 사업협동조합법」에 의한존계조합시 무입합동조합법」에 당하존계조합시기수업협동조합및 그 자회사를 모어 사업협동조합및 다든 전기본법 기업협동조합및 나다건 이 등을 받았거나 위한 나는 이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라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목의 이전 1년 이내에 제한다. 가 임착공고의 이전 1년 이내에 제한다. 가 있는 고의 이전 1년 이내에 제한다. 기안 하는 고의 이전 1년 이내에 제한다. 기안하고 고의 이전 1년 이내에 제한다. 기안하고고의 이전 1년 이내에 제한다. 기안하는 지역되었다. 금 역 특의 에는 이 에 등 등 등 등 등 등 에 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

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 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 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 밀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보증 등에서 먼 (2) 보증기간의 \*\*보급한 날 중에서 먼 성의 한 보증기간의 한료일 : 하자 담보책임 지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 담보책임 지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 담보적임 이 입찰참가자 또는 의 기재된 보증내의 기간 이 입찰참가자 또는 의 기자된 보증에 의학 보증보험증권 귀속시키야 할 보증는 보증보험 기간 동보험증권 기자정된 면책사 금액을 보증하고 누는 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기본 점인 보증하고는 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기본 점인한 수 보증하고는 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기본 필요한 사항을 다 이를 정부유가증권취급 대정에 의한 수 이를 정부유가증권취급 대정에 의한 보증금

제56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취급공무원으로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5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중 질권설정동의서의 제출, 등록국채의 보관, 질권의 설정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증서등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3조(보증금의 반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7조·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 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 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

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5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5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에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후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인정되는 자4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인정되는 자4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인정되는 자4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인정되는 자4 구원은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하여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위해 그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9. 9. 17.>

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당해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유가 증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9. 3.

1.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한다.

제9조(입찰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과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되다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루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천문개정 2012, 12, 18.]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통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2. 29.>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2. 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한다.<개정 2003. 12. 11.>

제64조(보증금등의 국고귀속)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리하여야한다.
각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처리하여야한다.
각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 그 록 보증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 그록 외수 하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 그록 요청하여야한다.
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위 등지하여수입금으로 정수하여야한다.
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자에 있어서는 그 등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자정에 의하여 정부유가 증권취급 점과 유가증권취급 점과 유가증권취급 점과 유가증권취급 중시 등인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등의 유가증권취급 등이 등인 경우 함에 되어야한 한다.
3. 보증보험증권취급 통지하여 있어 경우에서 통지하여야한 등인 경우 함에 의 등의 보증보이라고 뜻을 무하에 되는 사에 그로 지어하고 등의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에는 관및당해보 중시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6.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6.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6.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6.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6.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6.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6.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4. 집 지어를 하게 하여야한다.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9. 17.> 열시들 답을증보에 당시한 당보되 결사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3. 9. 17.>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2. 선사소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 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기획재 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 9. 9., 2008. 2. ④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 ④ 제12도 및 제21도의 규정에 의한 영 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개정

1998. 2. 2., 1999. 9. 9., 2008. 2. 29.>

**제44조(입찰무효)** ①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2. 3. 25., 2002. 8. 24., 2006. 5. 25., 2006. 12. 29., 2009. 3. 5., 2012. 5. 18., 2013. 9. 17., 2016. 2. 1., 2016. 9. 23., 2021. 7. 6.>

0.>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

교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 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돌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 를 제출한 입찰 5. 삭제<2006.5.25.>

|5. 삭제<2006.5.25.>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제 2010 7 21 5

6의2. 삭제 < 2010. 7. 21.>

6의2. 삭제<2010. /. 21.>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다. 삭제 <2006.12.29>

삭제 <2006.12.29>

인 대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 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신설 2016. 9. 23.>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한다.<개정 2000. 12. 30., 2002. 8. 24., 2012. 5. 18., 2013. 9. 17.>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한다.<개정 2000. 12. 30., 2002. 8. 24., 2012. 5. 18., 2013.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로 당시에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업격기로 확정된자기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개정 2010. 7. 21.>
③ 삭제<2000. 12. 30.>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각 중앙판 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격하지 아니한 자가 입상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이 집찰시의 집찰 등 인찰시의 입찰 등에 경기를 대접하게 함께 참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문원은 제출된 입찰시의 입찰 등에 이 장기를 대접하여 한다. 디자면 제42조제 190에 따라 계약이 행능 력 및 일자리장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나 제42조제 2위 학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의 공사수항 병극 및 사회 학의 시합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나는 등 나 절자의 입찰기의 고생수이 보험 수 있다. <개청 2006. 5. 25., 2015. 12. 31., 2018. 12. 4) > 2018. 12. 4) > 33 제3조제 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 나 집착 지원 기관에 가장에 보는 전자 일착시를 가장 의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구정에 불구하고 입찰관과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인을 받아. <개청 2002. 7. 30., 2011. 12. 31., 2013. 19. 17. > [전문개청 2000. 12. 27.]

제41조(세일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로 결정에 세일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3. 12. 11., 2006. 5. 25., 2018. 12. 4., 2019. 9. 17.>
② 삭제<2018. 12. 4.>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신설 2006. 5. 25.>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의 경우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의공사 또는 용역입찰한 입찰자 중 (용역기 학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을 말하며, 지식 이하로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1. 7. 6., 2023. 11. 16., 2024. 5. 7.>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 성한다.<개성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1. 7. 6, 2023. 11. 16, 2024. 5. 7.>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수리 등에 관한수리 등에 관한수리 등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등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이 이정하는 경우적 1세39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이의 8 역으로 전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기본설계 1시 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기본설계 1시 2조제 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기본설계 1시 2조에 1시

2006. 5. 25., 2008. 2. 29., 2015. 12. 31., 2019. 9. 17.>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06. 5. 25., 2015. 12. 31., 2019. 9. 17.>
⑧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동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신설 2006. 5. 25., 2020. 9. 29.>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물 당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인 전문 상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인 전문 상 · 기술성 ·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 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들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저와계약을 채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한다.<개정 1996. 12. 31, 2003. 12. 11, 2019. 9. 17, 2021. 7. 6.>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 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인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 12. 31, 2019. 9. 17.>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대 참가하고자라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6. 12. 31. > 4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 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 2 0 17 2 2013. 25., 2013. 9. 17.>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 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 다. 신설 2001. 5. 25.> 

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 한다.<신설 2006. 5. 25.>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5. 9. 8., 2009. 8. 21., 2011. 1. 17., 2014. 5. 22., 2020. 12. 8., 2021. 9. 14.> 21, 2011. 1. 17, 2014. 5. 22, 2020. 12 8, 2021. 9. 14.>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 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 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있어서는 고난 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 다. 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 털콘텐츠산업 텔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 7. 기소의 기소의 기업 연구용역 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 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당한다고 인성하는 사업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 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3. 12. 11.]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 ·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 7. 6., 2024, 12, 24.> 6, 2024. 12. 24.>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 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 경 2. 최 경우
2.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한다. 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경쟁적 대화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에 의한 기술한 기술에 의한 계약 시계약 보다는 일부 제외한 수 있다.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부적인 가이 역사계열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더는 제3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학으로 본다.<개정 2019. 9. 17 > 제1한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7 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 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12. 4.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임차계 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 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1999. 9. 9., 2000. 국설사도 한다.<개성 1999. 9. 9., 2000. 12. 27., 2024. 12. 24.>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 2000. 12. 27.>

제42조(입찰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 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 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이 호하다 5호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을 당해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의용의 9.9.>

《가정 1999. 9.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개정 1996. 12. 31., 2016. 9. 23.>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공하여 기상이 하여 있다. 9., 2000, 12, 30,>

제46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야 한다.

제45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 자 결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 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상의 단가 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자를 하다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한다.

제4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영 제45조 또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 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1999, 9, 9, 2003, 12, 11, 2024, 12, 정 1999. 9. 9., 2003. 12. 11., 2024. 12. 24.>

제4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영 제45조 또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 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5,, 2015. 12. 31, 2018. 12 2006. 5. 25., 2015. 12. 31., 2018. 12 4.>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 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 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 자를 결정

자를 결정

2.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제<2018. 12. 4.>
4.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낙찰자를 결정|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
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 찰자를 결정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 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 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기 원 할

\_\_\_\_ 수 있다. \_삭제<2006. 5. 25.> ③ 삭제<200o. J. Z. [제목개정 2015. 12. 31.]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영 제45조 또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 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 ·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제41조부터 제43조까 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4조부 터 제47조까지의 그저에 따르 게이보네? 능을 고려할 때 세41소부터 세43소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한시적으로정하는 기준・절차(이하 이 조에서 "시범특례"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수있다 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와 세악들 세글로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에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시범특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계약에 적용될 시범특례를 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에 역용될 시념특례를 성해 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특례요청서를 제출해야 한 다. 나.
1. 계약의 목적물이나 계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의 내용
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사유등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 등 시멈득데 석용의 필요성
3.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한 기준・절차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해당 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시범특례의 유효기간
5. 시범특례 적용 시 기대효과
6. 그 밖에 시범특례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사항 사항으로서 기획재성부상관이 성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 정부장관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 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따 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따 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제4항제2호에 하 로 기본특례 적용의 필요성이 있고,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 체결 기정되 한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기관 인정되 학 기위해 별도의 계약 체결 기전되 한 기위해 별도의 계약 체결 기전되 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공조달제 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일한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참과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참과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제5항에 따위 시범특례를 정한 날부터 2년의 기간다고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한 남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범특례에 따위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범특례에 따위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한 시범특례에 따위 이상 유효기간를 연장한 시범특례에 하여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범특례에 하여 이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범특례에 하여 이상 기획대정부장관은 시범특례에 하여 기획대정부장관은 시범특례에 등에 대 기획된 계약 대상 사업 결과약법 바탕으로 해당 시범특례를 국가계약 바탕으로 해당 시범특례를

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한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에의 반영 여부에 관하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범특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시범특례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조 사·연구 자·인구 2. 시범특례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마련에 필요한 조사·연구 3. 제7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조 사·연구 3. 세7양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소사·연구
4. 그 밖에 시범특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특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4.]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10찰생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3. 각 중앙관세의 잘 똑는 계약담당공의 각 중앙관세의 잘 똑같이 기준에 가당 점합하게 입찰한 자 안 경우에는 그 기눈에 기장 역납이게 입찰한 자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이나 된다. <신설 2019. 11. 26.>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④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되는 계약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취지를 이상과 보는 계약당다는 취지를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여야한다. <신설 2024. 3. 26.>
[전문개정 2012. 12. 18.] 유들 병시아여 기획새성무상판과 엽의한 경우 가.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둘이상의 계약상대자가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물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의 조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4. 9. 20.]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제48조(계약서의 작성) ① 법 제11조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 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 9. 19., 2008. 2. 29.>
② 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있다. 수 있다. 계약의 목적 체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遲滯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3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나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 나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2. 4. 5. 6. [전문개정 2012. 12. 18.] 제48조의2(국외공사계약) ①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 지통화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 지통화로 계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환율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 금액 조정 관련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2. 31.] - **경우** 당공무 작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2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경력되는 이기 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등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1999. 9. 9., 2009. 3.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50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20

고 (기정 2020. 5. 1.>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 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당해 계약보증금으로 보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당해 계약보증금으로 보면,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④ 삭제 < 1999. 9. 9.>

삭제 <1999. 9. 9.>

④ 삭세<1999. 9. 9.>
⑤ 삭제<1999. 9. 9.>
⑥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 2. 2., 2005. 9. 8., 2006. 12. 29., 2010. 7. 21., 2011. 2. 9.>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 12. 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 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곤란한 경우 ⑦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 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 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 다.<?거정 1999. 9. 9., 2005. 9. 8., 2008. 7. 29.>

9 삭제 <1998. 2. 2.>
® 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3. 12. 11.>

⑪ 삭제<2000. 12. 27.> [전문개정 1996. 12. 31.]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 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

기오시식, 될시 제8모시식 또는 될시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모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한다.<개정 1996. 12. 31, 2003. 12. 12.> 12.>

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50조의 규정하였다.

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접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대 152조제 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함의 유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 12. 31., 1998. 2. 2., 1999. 9. 9., 2000. 12. 27.> ② 제1항을 전용한다.<개정 1996. 12. 31., 1998. 2. 2., 1999. 9. 9., 2000. 12. 27.> ② 제1항을 전용할 때 다음 라에 따라 기성을 준용한다.<기성의 자수시켜야 한다. 기상을 지수시켜야 한다. 기상을 무기하다 기성부분은 제외한다)의 경우 기성부분은 지역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거유하고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은 제외하고 함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중기성부분은 제외하고 함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지시하고 만든 단가계약의 등을 중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기상으로 보험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 이이 안된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 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69조제2항 후단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제1항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 12. 31, 2022. 6.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대한 기업이 되었다. 1996. 12. 31, 2022. 6.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22. 6. 14.> 31., 2006. 5. 25., 2022. 6. 14.> 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계 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 용한다.<개정 2022. 6. 14.>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각 충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있다.<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6. 5. 25, 2010. 7. 21, 2018. 12. 4, 2019. 9. 17, 2020. 5. 1, 2024. 12. 24.> 1. 삭제 <2010. 7. 2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 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고식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납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납 부하는 방법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기관이 미인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5이 보험 기본법 기원을 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기원을 기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기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기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안을 보증하는 경우제약의 3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받당된으로 사계약의 장 또는 계약다당하는 강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강된 문에 따라 계약이행의 기원은 기원은 방법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 당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 반기의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6. 5. 25, 2010. 7. 21.> 1. 삭제<2010. 7. 21.> 신설 2006. 5. 25., 2010. 7. 21.> 삭제 <2010. 7. 21.> 삭제 <2010. 7. 21.> 1. 삭제<2010. 7. 21.> 3. 삭제<2010. 7. 2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9. 9. 4006. 5. 25., 2008. 2. 29., 2019. 9. 17. ⑤ 용역계약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1996. 12. 31., 1999. 9. 9., 2006. 5. 25., 2019. 9. 17.>

제66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삭제<2010. 7. 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31., 2010. 7. 2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의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31., 2010. 7. 21.>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위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 12. 31., 2010. 7. 2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96. 12. 31.>
⑥ 삭제<1996. 12. 31.>

[제목개정 1996. 12. 31.]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할 수 있다.<개정 1996. 12. 31., 2007. 10. 10.> 10. 10.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 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제13조(감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54조(감독)**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개정 2005. 9. 8., 2006. 5. 25., 2014. 5. 22., 2018. 12. 4., 2024. 5. 25., 2014. 5. 22., 2016. 12. 4, 2024. 5. 7.>
1.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전력기술관리법」제12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상 이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증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압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5. 9. 8., 2014. 5. 22., 2018. 12. 11.> 7.> [전문개정 2012, 12, 18.] 2018, 12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 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 예산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 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 다.<신설 2003. 12. 11.>

제13조(감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2. 12. 18.]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계약되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 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 박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고를 위임하여 기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원한 검사를 하게 함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가는 검사자조서(檢査調書)를 정하는 경이다. 감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이다. 감사하는 다른 품질인증을 반은 자가 담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물품에 다른 품일 인증받은 자가 물품에 다 아니할 물품무의 특성와 검사로 인하여 되었다. ④ 물품품의 특성와 검사로 인하여 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기는 변형 기는 12. 18.]

제55조(검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반이나 경기침체, 대량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개정 1999. 9. 9., 2008. 2. 29., 2020. 5. 1.> 2020. 5. 1.> 2020. 5.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2003

.<개정 2003. 12. 11.>
④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②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기건을 제산한다.
③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
12. 31., 1999. 9. 9.> 1999. 9. 9.> 31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선(檢查調書)를 작성하여야 하다 다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생기는 변형, 파손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 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 9. 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성구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지기 부담 만나.
[전문개정 2012. 12. 18.]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되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삭의 소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고의 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 자는 검사자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조서(檢查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조서(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건가 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작를 하지 아니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물품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물품에 다이나 같은 다음이는 지수 있다.
③ 물품구의 특성상과 검사로 인하여 시기는 변형 자라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소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 지수 당단,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 1항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개정 2016. 7. 28., 2017. 1. 26., 2019. 9. 17., 2020. 9. 29.> 2016. 7. 28., 2017. 1. 26., 2019. 9. 17., 2020. 9. 29.>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본조신설 2013. 6. 17.]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3. 12. 11.>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 유가 있다다 아니하다

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 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 자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 (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58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 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9., 2009. 6. 29., 2020. 5. 1.>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31.> 3 1996. 12. 31.>
③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 개절 1996. 12. 31.> 불 삼작아 역 석어노 30일마나 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다 기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다 기가입다 하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함을 일부가 부당함을 받은 제1항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가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에 지급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의 단시하여 기가입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외한다.<신설 2006. 12. 29.>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한다.<개정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 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 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 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개성 1999. 9. 9., 2008. 2. 29., 2013. 12. 30., 2014. 11. 4.>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 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1999. 9. 9.>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7호를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개정 1999, 9, 2014, 11, 4, 2019, 9, 1999. 9. 9., 2014. 11. 4., 2019. 9.

정 1999. 9. 9. 2014. 11. 4., 2019. 9. 1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기간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7조의 다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수 1간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 등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공사: 1년 일 영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당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한다. <개정 1999. 9. 9. >

제61조(하자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11., 2005, 9, 8, 2018, 1, 16.> 2005, 9, 8, 2018. 1. 16.>

11., 2005. 9. 8., 2018. 1. 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 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 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한다.<개정 1999. 9. 9.>

제71조(하자검사) ①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한다.

3.

니.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기타 참고사항 4.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 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 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 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주요한다. 다만, 기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기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그 아자의 모두를 되었다.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2008. 2. 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소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2008. 2. 29.>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소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나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다보증단의 대가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영화의 구정에 의한 하다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사외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9. 일반에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세 < 2010. /. 2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 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개정 1998. 2. 2.>

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각 중 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 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 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 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 의 2 영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의 2 영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의 2 영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의 2 위로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수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개정 1998. 2. 23., 2005. 9. 8., 2013. 6. 19., 2014. 11. 4.>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등을 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기를 건성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중앙관 공사의 |노납세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 |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 다.

나.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 9. 9., 2008. 2. 29.> 2008. 2. 29.>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 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 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유가 증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9. 3.

1.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 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보증기 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ट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 자담보책임기간동안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고도 전에 있는
의만 내가들 시급하고도 신역이 있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30.>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 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 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 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개정 2019. 11. 26.>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총공사 및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이하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이경우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이하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개정 1998. 2. 24, 1999. 9. 9., 2004. 4. 6, 2005. 9. 8, 2006. 12. 29, 2008. 2. 29, 2024. 12. 24.> 2008. 2, 29, 2024. 12. 24.>
1. 입찰일[수의계약(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가되때 된 때 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 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9., 2005. 9. 8.> 1999. 9. 9., 2005. 9. 8.>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99. 9. 9., 2002. 12. 30., 2005. 9. 8., 2008. 2. 29.>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1999. 9. 9.> 1999. 9. 9.>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4. 4. 6., 2005. 9. 8.>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 1999

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다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조정) ①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 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개정 2005. 9. 8. > <img alt="@@LATEX@@1.품목조정률 = \\frac{각품목또는비목의수량에등락목을급하여산출한금액의합계액}\\\mathrm{계약금액}\\@@/LATEX@@8amp;#10;&amp;#10 }}@@/LATEX@@
&#10 ;@@LATEX@@2.등락폭 = 계약단가 ₩times ₩mathrm{등락률 }@@/LATEX@@ @@LATEX@@3.등락률 = ₩frac{\mathrm{물가변동당시가격}-\mathrm{입찰당시가격}}{\\mathrm{입 찰당시가격}}@@/LATEX@@" src="/LSW/flDownload.do?flSeq=2598 3013"

/ /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략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 약금액

 등락폭 계약단가 x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3. 등락률

크리 법 " 그 증감되는 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 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

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춘에 의한다.<개정 2005. 9. 8. >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1999. 9. 9., 2009. 3. 5. >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신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를 가격변동으로 인하여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06. 12. 29., 2010. 7. 21., 2023. 11. 16.>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08. 12. 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정보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08. 12. 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18. 3. 6.>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 사한 지수 2009.3 을 적용하여 산성한나.<신을 2006. 12. 29., 2010. 7. 2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9. 9. 9., 2005. 9. 8. > 1999. 9. 9., 2005. 9. 8.>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9

9. 9., 2009. 3. 5.>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 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 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 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개정 2019. 11. 26.>

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3. 12. 11.,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2014. 5. 22., 2015. 6. 2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6. 12. 31., 2005. 9. 8.>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저가격다가로 하다 (이야 "네성가격단기"라 안나)모나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 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 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기 수이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나살률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역 가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점 100분의 50으로 한다. 역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점 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점에 기 이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 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 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망한다.<개정 2005. 9. 8.><mm alt="@@LATEX@@1.품목조정률 }}@@/LATEX@@
&#10 ;@@LATEX@@2.등락폭 = 계약단가 ₩times ₩mathrm{등락률 }@@/LATEX@@ src="/LSW/flDownload.do?flSeq=2598 3013"

/> /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품목조정률 =

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x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3. 등락률

입찰당시가격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 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

이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개정 2005. 9. 8.>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

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

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기속 포는 보급의 형편시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 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 는 지수

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다.<개정 1999. 9. 9., 2003. 12. 11.,

다.<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12. 31.>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8.

중앙관서의 상이 성한다.<개성 2008. 12. 31., 2014. 5. 22.>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9. 9., 2000. 2. 29./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2009. 3

2009. 3. 5.> ⑧ 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 (2006년 5월 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제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 락률은「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신설 2006. 12.

을 적용하여 산성한나.<신월 2006. 12. 29., 2010. 7. 2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9. 9. 9., 2005. 9. 8.>

1999. 9. 9., 2005. 9. 8.>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9. 9. 9., 2009. 3. 5.>

제7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 9. 9.]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개정 2019. 11. 26.>	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 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18. 3. 6.> ③ 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 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8. 3. 6.>	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등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 9. 9.]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고 금 관리법」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 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 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 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 각 중 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보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7996. 12. 31., 1999. 9. 9., 2002. 7. 30., 2008. 2. 29., 2013. 12. 30.>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가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가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가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무분되는 공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2. 3. 21.]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 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 2014 41 42 2014. 11. 4.>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 당소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 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시 ㆍ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 하다

전다. ⑤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 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 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다.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 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망한다.<개정 2005. 9. 8.><mm alt="@@LATEX@@1.품목조정률 <img alt="@@LATEX@@1.품목조정률
= ₩frac{각품목또는비목의수량에등락
폭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합계액
}{₩mathrm{계약금액</pre> }}@@/LATEX@@
&#10 ;@@LATEX@@2.등락폭 = 계약단가 ₩times ₩mathrm{등락률 }@@/LATEX@@ @@LATEX@@3.등락률 = \\frac{\mathrm{물가변동당시가격}-\mathrm{입찰당시가격}}{\text{\mathrm{입찰당시가격}}}\\mathrm{입찰당시가격}\\mathrm{입찰당시가격}\\mathrm{입찰당시가격}\\mathrm{입찰당시가격}\\mathrm{입찰당시가격}\\mathrm{입찰당시기건길\}\\mathrm{입 로 아이(기국)}@@/LATEX@@" src="/LSW/flDownload.do?flSeq=2598 3013"

/> / /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계 약금액

= 계약단가 x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등락률 입찰당시가격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 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

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기정 2005. 9. 8.>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

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

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기술 포는 보급의 형편시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 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 는 지수

(5)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6)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 아이 시한된 경우에는 출기현공식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은 이용 제69조 기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속(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급액 등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사정하면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09.3 2009. 3. 5.>
⑧ 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년 5월 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신설 2006. 12. 을 적용하여 산성한나.<신을 2006. 12. 29., 2010. 7. 2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9. 9. 9., 2005. 9. 8.> 1999. 9. 9., 2005. 9. 8.>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9. 9. 9., 2009. 3. 5.>

제23조(개산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概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2.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위탁 또는 대행계약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위한계약2 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가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가산계약을 제결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가산계약을 지열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가산계약을 지열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가산계약을 지열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가산계약을 제결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가산계약을 지열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가산계약을 지역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가산계약을 지역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가산계약을 지역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가산계약을 지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기관	검사원에 동시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6. 12. 31.>	
제24조(종합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있다. ②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 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71조(종합계약)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2008. 2. 29.>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 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72조(공동계약)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 9. 9., 2008. 2. 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에 되면 증당계속의 제결당합기다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가정 1999. 9. 9., 2008. 2. 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및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1999. 9. 9., 2002. 3. 25., 2006. 12. 29., 2016. 9. 2., 2010. 7. 21., 2011. 2. 9., 2016. 9. 2., 2020. 2.

21., 2011. 2. 9., 2016. 9. 2., 2020. 2.

21., 2011. 2. 9., 2016. 9. 2., 2020. 2. 18., 2020. 4. 7.>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외한다.

외안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1999.

|게널외사가 아니어야 안나.<개성 1999 9. 9., 2005. 9. 8.> |대통령령 제30597호(2020. 4. 7.) 제 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 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 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

제44조(입찰무효) ①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2. 3. 25., 2002. 8. 24., 2006. 5. 25., 2006. 12. 29., 2016. 3. 1. 2016. 9. 32. 2011. 7. 9. 17., 2016. 2. 1., 2016. 9. 23., 2021. 7. 6.>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 1. 합설 급기시기 이 없는 대한 입찰참 1의2. 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 자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 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돌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

|동일인으로 본나)이 2통 이상의 입찰서 를 제출한 입찰 | 5. 삭제 < 2006. 5. 25. > |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 | 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 | 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 | 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 | 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 6의2. 삭제 < 2010. 7. 21. > | 6이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

6의2. 삭제<2010. /. 21.>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다. 삭제 <2006.12.29>

삭제 <2006.12.29> 라.

인된 답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 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신설 <u>2016</u>. 9.

제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 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 다.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2. 31.]	
[전문개정 1996. 12. 31.]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산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6. 5. 25.]	

제74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 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 ·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9. 9., 2006. 5. 25., 2008. 2. 29.> 실 정 3 29.

29.>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99. 9.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이 다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신설 2018. 12. 4.> 2018, 12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2005. 9. 8, 2010. 7. 21, 2014. 11. 4, 2017. 12. 28.>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1천분의 1.25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천분 4. 의 1.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인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2, 12, 18.]

2018. 12. 4.>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개정 2010. 7.
21., 2018. 12. 4.>

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8. 12. 4.>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다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준용한다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2. 3. 21.]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 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 5., 2023. 3. 28., 2023. 7. 18.> 21. 1. 5., 2023. 3. 28., 2023. 7. 18.>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등 중대한 위해"란「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말한다.<신설 2021. 7. 6.> 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7. 6.>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2. 4., 2018. 12. 11., 2019. 9. 17., 2020. 12. 8., 2021. 7. 6.>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수 있는 것으로 한거나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입찰 하지 않은 입찰 무효사에 해당하는 지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입찰 무효사이 해당하는 입찰 무효사이 해당하는 입찰 무효사이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마. 삭제 <2019.9.17> 바. 삭제 <2019.9.17>

바. 삭제 <2019.9.17> 국제 <2019.3.172 삭제 <2019.9.17>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는 자로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사.

사. 삭제 <2019.9.17>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으로 시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거나 입찰조건의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한정한다 이을 위반한 자나.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 대를 위반한 자나.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무당성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다. 다. 성기술 진흥법 기원에 등 다. 당성 조사를 비해한 자다. 당성 조사를 비해한 자다. 감독을 방해한 자다. 감독을 방해한 자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른 건설가업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게 1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

아니아고 한 자 3. 다른 [ ]가시키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등에 필요한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절 2009 3.5 > 2009. 3

3 2009. 3. 5.>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2.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 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 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 하는 입찰"이란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개정 2021. 7. 6.>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76조제4항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7. 6.>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7조제 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개정 2016. 9. 23.>
② 삭제 76조 제11항에 따로 게피는 병

) 역제(1999, 9, 9,2) ) 영 제76조제11항에 따른 게재는 별 |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 |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 <u>③</u> 지 서 으로 한다.<개정 2006. 5. 25., 2013. 9. 17., 2016. 9. 23., 2021. 7. 6., 2025. 1.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 8. 24., 2013. 9.

(5) 영 제76조제12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영 제76조제12항 각 호의 사항만 기재한다)를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동안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는 방법으로한다.<신설 2016. 9. 23., 2021. 7. 6.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는 기단에 다는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기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제목개정 2012. 12. 18., 2016. 3. 2.]

12. 24 12. 24.>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 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제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당하는 자
2.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 • 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6.> 정한다.<개정 2021. 7. 6.> ⑤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 수급체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만 제3항을 적용한다.<개정 2021. 7. 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 른 차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6.>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2

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인을 제공한 지원을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한다.<신설 2024. 9. 2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시정조치만 받은 자기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면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문 면제 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 또는 면제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 또는 면제 나는 고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원인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일수(日數)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일수를 감정 <u> 감경</u>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일수(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한다) = A × B

A: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일수 B: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감경받은 과징금의 감경 비율

\*\* 역한 참가셔져 제한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일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시청조치 및 지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 라는 입찰 참가자 나는 해당 반은 자에 대해 다는 기관에 따라 하는 입찰 참가자 나는 해당 반으로 가는 제상하는 입찰 함께 하는 입찰 함께 가가 라는 이를 하는 기계를 하는 기계를 하는 입찰 하는 기계를 하는 기계를 하는 입찰 하는 기계를 하는 기계를 하는 기계를 하는 기계를 하는 기계를 하는 기계를 하는 기를 하는 기계를 하는 기계를 하는 기를 하는 기를 하는 기계를 하는 기를 하는 기

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에야 한다. (기) 2019. 9. 17., 2021. 7. 6., 2024. 9. 20.>
1. 업체(상호)명 • 주소 • 성명(법인인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사으 3. 입잘참가자격을 세안하는 구세역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 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 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9, 9, 17, 2021, 7, 6, 2024, 9, 20.> 조르시 - 1 - 1 - 2021. 7. 6., 2024. 9. 20.> 2019. 9. 17., 2021. 7. 6., 2024. 9. 20.> 1. 업체(상호)명 • 성명(법인인 경우 대 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 프호 2. 자 제1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 2. 세11양세2오누더 제4오까지에 예 6하는 사항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9. 17., 2021. 독 에야 된다. 시 8 2015. 3. 11, 2021. 7. 6., 2024. 9. 20.>
(4)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지역이 제한된 자와 제11항에 따라 지고 다니 사람이 꿰워된 지기 사람이 때 자격이 세안된 사와 세기당에 따라 신 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가 상호 • 대 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 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입찰차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 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개정 2019. 9. 17., 2021. 7. 6., 2024. 9. 20.> ⑤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장한다.<개정 2021. 7. 6., 2024. 9. 20 [전문<u>개정 2016. 9. 2.]</u>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 5., 2023. 3. 28., 2023. 7. 18.>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 는 기눈에 되는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 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 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참가시키 인정되는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 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 2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이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제2호나모 나무 제 고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이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아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4. 11. 4, 2016. 9. 2, 2018. 12. 4, 2021. 7. 6, 2023. 11. 16.> 1. 삭제<2024. 12. 24.> 2. 1. 삭제<2024. 12. 24.> 2. 국내・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우 급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대자로부터 받은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대자로부터 받은 사건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관련 책이 보증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계약자나하수급인 공동계약자나하수급인 공동계약자나하수 및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시행이 공무에 따른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한 경우 지수에 하여 계약으로 시청 기준의 공정성과 계약이한며 인정 모르아지 모한 경우 기준이 현당업자의 책임이 경마다고 연당업자의 책임이 경마다고 연당업자의 발한다는 경우로 제상되는 기공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제상되는 기공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제상되는 기공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지 기공인 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부과 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과 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2인 미인이 될 것으도 예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11. 4.> ③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본조신설 2013. 6. 17.]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1항과 영 제76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3 임이 정의한 정도의 되으며 도리기로 별표 3 2.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 76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 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되지 어디아는 성구의 최성은 구최기준 : 별표 4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 기·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19.]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6. >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 있다. <신설 2024. 3. 26.>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이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수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2017. 7. 26., 2020. 6.9.> 2020. 6. 9.>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 [제목개정 2012. 12. 18., 2016. 3. 2.] 제27조의2(과징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제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삭제<2023. 7. 18.>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니.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7조의2(과징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같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하 경 제7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받은 수납 영수증을 . ③ 기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기관은 과정금을 낸 사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고 '삭제<2023. 7. 18.>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4 제76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이었다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항 비능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항납부하게 할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 한 기에 처한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납부하여 지하는 기하의 따라 가 있는 경우 가 이 제 1호 부터 제 3호까지와 유사한 거위에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와 유사한 거 있는 경우 금 납부기한의 다른 보부를 통지받는 분부터 30일이 나 분할납부를 통지받는 처류를 하여 한다고 하이나 분할납부를 통지받는 서류를 하여 한다고 하는 사유를 당하는 서류를 하여야 한다고 중앙관서의 장에서 신청하여야 한다고 중앙관서의 장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본조신설 2012. 12. 18.]
제27조의2(과징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검색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 급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 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고 ' 삭제<2023. 7. 18.>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한까지 .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 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성 2012 6 171

> 법제처 81

2013. 6. 17. 제76조의5 삭제 <2023. 11. 16.>

조신설

<b>제76조의6</b> 삭제 < 2023. 11. 16.>	
<b>제76조의7</b> 삭제 < 2023. 11. 16.>	
<b>제76조의8</b> 삭제 < 2023. 11. 16.>	
<b>제76조의9</b> 삭제 < 2023. 11. 16.>	
<b>제76조의10</b> 삭제 < 2023. 11. 16.>	
<b>제76조의11</b> 삭제 < 2023. 11. 16.>	
<b>제76조의12</b> 삭제 < 2023. 11. 16.>	
<b>제76조의13</b> 삭제 < 2023. 11. 16.>	
<b>제77조</b> 삭제<1998. 2. 2.>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 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 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1999. 9. 9.>	

제79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9. 9., 2006. 5. 25., 2007. 10. 10.>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 결임 1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다. 다.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 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 9. 세측비대당 3시 대는 3시 대기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9	18 2 2 2005
9. 8., 2006. 5. 25., 2014	. 5. 22.>
제80조(대형공사 입찰병 ① 작성의 전 다 의 장이는 기술 기상이는 기상이 기상이는 이 기	대형공사 및 특이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 함의 사항에 의위원회의 심 1999. 9. 9. > \ \  \  \  \  \  \  \  \  \  \  \  \
<b>제82조</b> 삭제<1996. 12.	
<b>제83조</b> 삭제<1996. 12.	21 .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 일 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 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 물합설는 기본설계합설들 설시하여 세 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 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개정 1999. 9. 9., 2005. 9. 8., 2006. 5. 25., 2014. 5. 22.>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삭제<2006. 5. 25.> 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 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9. 8., 2014. 5. 22.> 지글 검구에서 제출어서야 한다.
2005. 9. 8., 2014. 5. 22.>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가. 의 다.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 기니 등교도 표구한 작용 실시설계서의 경우 .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 2. 가. 의 댸 역서 .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삭제<1999. 9. 9.> 라. ④ 삭제 < 1999. 9. 9.>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6. (4) 5. 25., 2016. 9. 2.>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8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3. 일괄입 값로 발고된 양차 경기 있었다. 서를 제출받은 때 3.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6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6. 12. 31, 1998. 2. 2., 2014. 5. 22.>
⑦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 자문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 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 ·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 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 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 12. 31, 1999. 9. 9, 2014. 5. 22.>	
--	--

당입으로 역절자들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 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 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 기정 높은 사들 학결자도 결정하는 당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0. 10.]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사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함공 사 예정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이하일 것 우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제85조제 5항에 따라 설계점수가 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목통지으로 지안입찰서에 대하여 및 설통지된로 대안입찰서 중안관서의 작격으로 존대안 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 대안일공동에 대한 대안임적이는 후 대안설계점수보다 되는 대안의 대안 당시에 다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지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기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개정 2006. 12. 29., 2019. 9. 17.> 않는다.<개성 2006. 12. 29, 2019. 9. 17.>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재택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서상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개정 2019. 9. 17.>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지원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지 생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지 않은 공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택되지않은 공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택되공총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장존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장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상하고 11만을 제상하고 11만을 제상하고 11만을 제상하고 11만을 제상하고 11만을 지원하다. 17.> 의 각 2019. 9. 17.>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에 2019. 9. 17 들 중합 점사하여 학결자들 결정 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	
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	
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중앙건설기 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5.	
22.> [전문개정 2006. 5. 25.]	

위에 따라 농사들 시행아게 알 수 있다.<신설 1999. 9. 9., 2014. 5. 22.>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하여야 하다 소시설 1999. 9. 9. >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1999. 9. 9.>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수 없다.<신설 1999. 9. 9., 2000. 12. 27.>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 • 제출에 관한사항등을 입찰안내서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전에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9. 9. 9. >	
<b>제88조</b> 삭제<1999. 9. 9.>	
제89조(설계비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2011. 12. 31., 2014. 11. 4.>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 9. 9., 2008. 2. 29.>	
<b>제90조</b> 삭제 <2006. 5. 25.>	

소 2 시 구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h.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 !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 년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b>  91조의2</b> 삭제<2006. 5. 25.>	
3 <u>o</u> <u>t</u>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 년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X O 回	92조(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 F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 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 나의 사업계획・시공과정・실적 및 효 나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개정 005.9.8>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계약이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0. 7. 21, 2011. 12. 31, 2013. 9. 17, 2016. 9. 21., 2011. 12. 31., 2013. 9. 17., 2016. 9.

2.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기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9. 8.]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 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 3, 5,, 2010, 7, 21, 한다.<개성 2009. 3. 5., 2010. 7. 21., 2016. 2. 1., 2016. 9. 23.>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가. 계약의 목적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다. 예산액 고 등에 대한 분기별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에 관한 사항 · 물품 제조·구매계약: 성능, 재질 제원 등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조 건 나. 용역계약: 과업 내용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용역의 세부사항 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가. 계약의 목적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제72조제3항 적용 여부)다.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ᄓ · 그 시규 ·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 액.....

제93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 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초제1항제1호나목 및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0. 7.

4. 계약변경에 관안 사양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비경의 사유 5.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가. 검사 및 검수 결과 나. 계약이행 완료일 [본조신설 2005. 9. 8.]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년 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 3. 5.>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이 장 연는 그 소속기관이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이 한 한다.< 가장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15. 6. 22., 2016. 9. 2., 2018. 12. 4., 2023. 11. 16.>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계약과 관련하여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과 관련하여질의한 사항 3.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관한 사항 3.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관한 사항 3.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관한 사항 2억구한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한다.< 개정 2005. 9. 8., 2015. 6. 22., 2023. 11. 16.>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수이풍부한다.< 개정 2005. 9. 8., 2015. 6. 22., 2023. 11. 16.>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가항인 우영에관하여필요한 세부사항인가 중앙관서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 6. 22.] 제95조 삭제 <2005. 9. 8.> 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① 삭제 <2013. 9. 17.> [본조신설 2000. 12. 27.] [제목개정 2015. 6. 22.] 제95조 삭제 <2005. 9. 8.> 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① 삭제 <2013. 9. 17.> [본조신성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 93조의 규정에 의한계약실적보고, 그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개정 2013. 9. 17.> [본조신설 2002. 7. 30.]	
맛 기 다 이 되는 게 그 글 그 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 9. 17.> [본조신설 2002. 7. 30.]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 약 <신설 2007.10.10>	
제97조(적용대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징성・기념 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 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 물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 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0. 7. 21.> 1. 삭제<2010. 7. 21.> 2. 삭제<2010. 7. 21.> [본조신설 2007. 10. 10.]	

<b>제98조(정의)</b>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21.>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 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 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	
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 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 7. 21,	제81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 방법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78조, 제 79조, 제79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결시설세 기술세안입설등 이라 안나 )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 7. 21., 2016. 9. 2.>	
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 7. 21, 2016. 9. 2.>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7. 21, 2013. 3. 23, 2013. 12, 30.>	
지수 결성당답에 판안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한 제07조에서 정한 공사의 진해기보계	
지기 보이지 않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2008. 2. 29., 2010. 7. 21., 2013. 3. 23., 2013. 12. 30.> 1.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본설계	
다.<개성 2008. 2. 29,, 2010. 7. 21,, 2013. 3. 23,, 2013. 12. 30.> 1.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실시설계 기술제 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③ 제80조제3항과 제5항은 입찰방법 공고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시설계시를 직정한 우 설시설계 기술제 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 출 ③ 제80조제3항과 제5항은 입찰방법	
[제목개정 2010. 7. 21.]	
제100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 을 각각 준용한다.	
제101조 삭제 <2010. 7. 21.>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실시 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4조 본 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 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1, 2016, 9, 2,> 낙찰사를 결성하여야 한다.<개성 2010.
7. 21,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정하는 방법
2.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기술제인연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적격기술 지원되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1, 2016. 9. 2.> 적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1,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 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 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 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필요한 기술제안점수 · 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 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 7. 21.>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네 역시 6.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 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회에 해당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 전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의 탁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 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의 및 점수 평가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 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 5, 22.>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6. 다.<개정 2014. 5. 22.>
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기술제안서 심의를 하는 경우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근 에에 데면 그 드 \_ \_ \_ .<개정 2014. 5. 22.>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제104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을 하는 경우 제10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입찰한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다만,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7. 21,, 2021. 7. 6., 2024. 7. 16.>
1.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공사: 계속비예산 2.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않은 공사: 총공사예산[본조신설 2007. 10. 10.]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 7. 21.>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사항 사항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2.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1조 에 따른 관계 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의 명백히 한 산출내역 서 함한다)의 내용에 비수어 비미의 기 기 기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기 

-TII D 71 7 0040 - 044	
[제목개성 2010. 7. 21.]	
[제목개정 2010. 7. 21.] 제106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기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의 적격통기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 기업적	
제 글 단 시 글 지 글 지 모 단 8 단 대 2014. 5. 22.> ③ 제 87조제 3 항 부 터 제 8 항 까지는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10. 7. 21.>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제 107조(기술제 안 인찰 제 안서 작성비	
제107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세안입살에 참가한 사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  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  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4.]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 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 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09조(평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0. 10.]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신설 2013.6.17>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1. 제4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 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

제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된 사항

고. 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 등과 관련 된 사항

제10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4. 관련된 사항

관련된 사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한다.<개정 2020. 3. 31.> 한다.<개

인디, (기 중 2020, 3, 31, 7)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 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31,>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 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2. 12. 18.]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 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 법 제 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 11. 4., 2018. 12. 4., 2019. 9. 17., 2014. 11. 4, 2018. 12. 4, 2019. 9. 17, 2021. 7. 6, 2025. 8. 5.>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4억원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8천만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위 . 원 원 원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4. 11. 4., 2021. 7. 6., 2025. 8. 5.>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1의2.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1의3. 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지연일 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 에 1002 한 사항 3. 제70 른 정산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정산과 관련한 사항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4. .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한 사항 「국고금 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행령 제4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미리 |급한 후 해당 계약의 해제·해지, 선 |급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 계약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보환과 관련된 사항 복조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2014. 11. 4.] 중전 제110조는 제116조로 이동 2013. 6. 17.>] 와 6

103 법제처

-<2013. 6. 17.>]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법제29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조달청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2022. 6. 14., 2025. 8. 5.>② 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③ 삭제<2023. 11. 16.>
[전문개정 2016. 9. 2.]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 는 분쟁을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3. 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위촉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16. 3. ③ 낙제<2023. 11. 16.> [전문개정 2016. 9. 2.] [제목개정 2023. 11. 16.] 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 각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 3. 2.> (2010, 3, 2.> ⑤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다. <신설 2016. 3. 2.>
⑥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 2.>
⑦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6. 3. 2.>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3. 2.> 제111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법제처 104

[본조신설 2023. 11. 16.]

제111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 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 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해당 안건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경우 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 사물 한 경우 의로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 시가를 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기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6.]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 는 분쟁을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2016. 3. 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위촉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16. 3. 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 각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 3. 2.> (2010, 3, 2.> ⑤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다. <신설 2016. 3. 2.>
⑥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 2.>
⑦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6. 3. 2.>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3. 2.> 

제111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법 제 29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사기: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 | 1. 심신쇠약으로 식무를 수행할 수 없기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제111조이2제1하 또는 제2하이 사 5. 제11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 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3. 11. 16.]

제11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16.]

2023. 11. 16.

	제111조의6(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회의 대원회의 대원회의 대원회의 대원회의 기위해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이하 이 자 기원회 등은 각 호의 소위원회(이하 이 자 기정 2024. 12. 24.> 1. 24. 의 기상에 사 기정 2024. 12. 24. 의 기상에 가장에 가장에 가장에 가장에 가장에 가장에 가장에 가장에 가장에 가장	
	® 소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해야한다.<개정 2024. 12. 24.> ⑨ 소위원회의 회의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11조의5 및 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개정 2024. 12. 24.> [본조신설 2023. 11. 16.] 제111조의7(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시작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②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 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 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다.  제112조(심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사・조정 청구의 사실을 통지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사・조정이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삭제<2020. 5. 1.> [본조신설 2013. 6. 17.]	

지구시하 2시 시항 2. 제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1시항 2. 제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1시항 3. 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 등과 관련 1시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인이내 또이 내면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인이내 50일 이니션청의 원인이내 50일 이의신청의 15일 이내에 하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에 하당 중앙관서의 장의 이의신청의 15일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이의신청의 15일이내에 하당 중앙관서의 장의 이의 15일이내에 15일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2. 12. 18.] 위원청조조에 따른 날부터 15일이내에 129조정(調수) 유조정이 지금 함께 15일이내에 120인의 장과 15일이내에 120인의 장과 15일이내에 120에게 120인의 120인의 12인에게 12인이 3. 31.> 조정의 15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라는 자리 15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라는 자리 15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라는 자리 15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15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15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15일이내에 15일이내에 15일이내에 15일이내에 15일이내에 15일이내에 15일이내에 15일이내에 15일이라는 자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15일이라는 자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15일이라는 자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15일이라는 자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15일이라는 자판상 화해(和解)와 2020. 3. 31.> [전문개정 2012. 18.]		
	제114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4조의2(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3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 114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소송 결과를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위원 회의 심사・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 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 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 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7.]	제86조(심사・조정 관련 비용 부담의 범위와 정산) ① 영제115조에 따라 심사・조정의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과 시험에 드는 비용 2. 증인과 증거 채택에 드는 비용 3. 검사와 조사에 드는 비용 4. 녹음・속기록과 통역 등 그 밖의 심사・조정에 드는 비용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심사・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내게할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조정관련 비용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심사・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미리 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본조신설 2013. 6. 19.]
2013.6.17>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2.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4. 제24조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무 5. 제50조에 따른 지역경쟁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무 6. 제6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무 6. 제6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무 7.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1. 16.]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 삭제<2016. 12. 30.> 3. 삭제<2016. 12. 30.> 4. 삭제<2016. 12. 30.> 5. 삭제<2016. 12. 30.> 6.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 5., 2023. 3. 28., 2023. 7. 18.>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 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 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참가시키-인정되는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 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5. 12. 31, 2016. 9. 2.>
1.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 제심사위원회 2.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3.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15. 6. 22.] [제목개정 2016. 9. 2.]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 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항 경기 개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 항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품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6.>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위에는 절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개청 2012. 12. 18.> (4. 제1항에 당로 가라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2017. 7. 26., 2020. 6. 9.>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한 장은 제1한의 중은 제1한의 주요 기관이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그 제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제목개청 2012. 12. 18., 2016. 3. 2.)